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 12월 6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7일(木), 마포구청장

###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2일(火)

### 4. 폐지사유

-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을 종료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함.

### 5. 폐지근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1호, 2008. 3.28, 폐지]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668호, 2008. 7.30, 폐지]

### 6.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2008.3.28)로 더 이상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폐지조례 부칙에 2012.1.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

## 7.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9. 3. 18일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시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 관련 사업이 남아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당분간 특별회계를 유지하되 연차적으로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던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도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이미 조례를 폐지하였고,
- 2011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11.7.5)에서도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2008년도에 폐지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으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2008.3월 이후에는 상위법 폐지에 따라 우리 구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는 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법을 폐지함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시행 시기를 2012년 1월 1일부터 하는 안 부칙 제1조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과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잔여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귀속하고 향후 우리 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8. 참고사항

- 관계법규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법률 제9051호, 2008. 3.28)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68호, 2008. 7.30)

# [ 관 련 법 규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시행 2008. 3.28] [법률 제9051호, 2008. 3.28,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051호, 2008. 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시행 2008. 7.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68호, 2008. 7.30, 폐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4668호, 2008. 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1.1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08회계년도의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